

##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▣ 펀드명: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(주식)

- 다 음 -

항목	변경전	변경후				
<p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p>	<p>운영역 변경 추가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변경시행일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변경사항</th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0.10.29</td> <td>책임운영전문인력 변경 (고희탁 -&gt; 동일권)</td> </tr> </table>	변경시행일	변경사항	2010.10.29	책임운영전문인력 변경 (고희탁 -> 동일권)
변경시행일	변경사항					
2010.10.29	책임운영전문인력 변경 (고희탁 -> 동일권)					
<p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5. 운영전문인력</p> <p>(1)책임운영전문인력</p>	<p>고희탁이사 : 1968년생                      운영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: 1개                      다른 운용자산규모: 550억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:                      -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                    -ING 자산운용 주식운용 팀장                      -삼성투신 주식운용 매니저</p> <p>주3) 2010.9.30 순자산액 기준</p>	<p>동일권: 1955년생                      운영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: 1개                      다른 운용자산규모: 111억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:                      - 고려대학교 재무회계 박사학위                      - 대우투자자문 리서치 총괄                      - 취리히스커더코리아(주) 주식운용팀 상무                      - 도이치인베스트먼트아메리카 주식운용팀 상무</p> <p>주3) 2010.10.29 순자산액 기준</p>				
<p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</p>	<p><b>(1)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: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b></p> <p>다만,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, 취득세,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.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</p> <p>1) 발행방법 요건 : 법 제 9 조제 7 항 및 제 9 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</p> <p>2) 최소투자자 요건 :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.</p> <p>3) 투자액 분산 요건 : 30 인(집합투자자가 150 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수)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.</p>	<p>삭제</p>				